

●산업통상부고시 제2026-99호

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08월 13일

산업통상부장관

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를”을 “다음 각 호의 기관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
2. 한국지질자원연구원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전담기관의 지정) 「국가자 원안보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제6 호에 따른 “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<u>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 협회를 말한다.</u>	제3조(전담기관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</u>
<u><신 설></u>	2. <u>한국지질자원연구원</u>
<u><신 설></u>	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<u>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</u>